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75호 2017. 2. 24. (금요일)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7-1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김성*) 2
- 하동군 고시 제2017-21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3
- 하동군 고시 제2017-2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종합건설) 6
- 하동군 고시 제2017-2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민병*) 7
- 하동군 고시 제2017-2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 8

입 법 예 고

- 하동군 공고 제2017-155호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
- 하동군 공고 제2017-156호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3
- 하동군 공고 제2017-201호 하동군 한다사대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1
- 하동군 공고 제2017-226호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8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7-162호 2017년 양식시설현대화사업 모집공고 43
- 하동군 공고 제2017-192호 소하천정비 사업시행 변경 공고(사생골천 정비사업 외 1건) 67
- 하동군 공고 제2017-194호 소하천 정비사업 보상계획 변경 공고(사생골천 정비사업 외 1건) · 82
- 하동군 공고 제2017-195호 하동군 인구증가 아이디어 공모 93
- 하동군 공고 제2017-211호 하동군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방역소독) 95

회 람									
--------	--	--	--	--	--	--	--	--	--

하 동 군 공 보

(2) 제 475 호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 허가 고시

하동군 고시 제2017-17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7일

하 동 군 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법인 및 상호 명칭			
	대표자 (성 명)	김성애	주소	부산시 북구 의성로 127번길 한성맨션 3동 305호
공사(점용· 사용) 개요	장소	하동군 금성면 진정리 1136(구) 인근지번 : 진정리 226-7(전)		
	면적	39㎡		
	기간	2016. 8. 26. ~ 2021. 8. 25.		
	목적	진출입로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계획평면도 및 위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하동군 고시 제2017-21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2. 9.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고서길 67-37 외 12 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3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2. 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하 동 군 공 보

(4) 제 475 호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146-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신기공항 길 31	20170209	20070618	신기마을과 공항마을을 지나가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합성하여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598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개치미동 길 65	20170209	20070618	개치와 미동의 마을명을 합성하여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전대리 872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윗전대길 51-22	20170209	20080402	전대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 619-3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수길 88-44	20170209	20080402	옥산의 물이 맑게 흐르므로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통리 815-1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금오산길 155-106	20170209	20090302	금오산의 지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탑리 155-5, 155-7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백혜길 51	20170209	20090302	마을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187, 188-3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1933	20170209	20090302	횡천-청암간 도로로 주 이용도로가 청학동으로 가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1055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한재길 152	20170209	20090302	북쪽에 있는 큰 고개라고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중대리 389-2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상중대2길 7	20170209	20090302	중대리 윗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명에 일련번호방식의 두번째 도로명 반영	

하 동 군 공 보

(5) 제 475 호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안계리 210-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267-2	20170209	20090702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감당리 산182-1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경서대로 1563	20170209	20090710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615-1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2356-22	20170209	20090710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888-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고서길 67-37	20170209	20140701	자연마을명으로 도로명 부여	

하 동 군 공 보

(6) 제 475 호

하동군 고시 제2017-2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허가 대상자	성 명 (주)토지종합건설(대표자:정학규)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055-973-3960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194811-0001014
	주 소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수로 70	

장소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851-6(구), 인근지번: 중평리 829(답)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422.2m²

(또는

m³)

목적

임시 가도 설치(진교~노량 간 확·포장 공사)

기간

2017. 2.10.~2017. 8.20.

점용·사용의 유형

토지의 점용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17년 2월 15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고시 제2017-26호

공유수면 점용 · 사용 허가 고시

허가 대상자	성 명 민병하	생년월일(성별) 1964.12.10.(남)
	전화번호 010-4545-7969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641210-*****
	주 소 경남 하동군 화개면 영당1길 44-2	

장소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966(구), 인근지번: 덕은리 552-2(답)

면적(또는

채취량 · 투기량)

38 m²

(또는

m³)

목적

진출입로

기간

2017. 02. 20. ~ 2022. 02. 19.

점용 · 사용의 유형

토지의 점용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 · 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7년 2월 20일

하 동 군 수

하 동 군 공 보

(8) 제 475 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하동군 고시 제2017 - 2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1일

하 동 군 수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km)
결정	군도	20호	노량~고이	노량리 대치리	29,197	노량리 산4-8	대치리 70-45	대치리 70-6	L=1.56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남해안일주도로(대치-연화)확포장공사 시행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2017년 10월 26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붙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기간 : 2017년 2월 22일 ~ 3월 10일

-장소 : 하동군청 건설교통과(별관 2층)

첨부서류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토 지 조 서

사업명 : 남해안일주도로(대치-연화) 확포장공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비고
	읍면	리	본지번	편입지번		전체	편입	성명	주소	
계							29,197			
1	금남	노량	산4	산4-8	임야	14,328	214	구동명 등 2인	부산시 영도구 영선동4가 245-1 대원맨션 4-101	
2	금남	노량	산4-1	산4-10	임야	7,000	1,831	(주)썬블루	경남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232-6	
3	금남	노량	산4-4	산4-14	임야	386	166	(주)썬블루	경남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232-6	
4	금남	노량	12-2	12-3	임야	2,920	99	(주)썬블루	경남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232-6	
5	금남	대치	산113-1	산113-10	임야	13,871	82	(주)썬블루	경남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232-6	
5-1	금남	대치	산113-1	산113-11	임야	13,871	378	(주)썬블루	경남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232-6	
6	금남	대치	산113-4	산113-12	임야	9,916	411	(주)썬블루	경남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232-6	
7	금남	대치	산113-5	산113-13	임야	9,692	619	(주)썬블루	경남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232-6	
8	금남	대치	산113-6	산113-14	임야	9,610	133	(주)썬블루	경남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232-6	
9	금남	대치	산113-7	산113-15	임야	9,746	361	(주)썬블루	경남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232-6	
10	금남	노량	산4-3	산4-12	임야	2,316	49	하동군		
10-1	금남	노량	산4-3	산4-13	임야	2,316	3	하동군		
11	금남	노량	산3	산3-1	임야	893	151	정희범		미등기
12	금남	대치	산109	산109-2	임야	34,612	1,168	하동군		
13	금남	대치	산112	산112-1	임야	6,744	2,233	하동군		
14	금남	대치	70-12	70-55	잡종지	16,529	2,234	한국자산 신탁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스타타워 19층	

하 동 군 공 보

(10) 제 475 호

15	금남	대치	70-33	70-56	잡종지	16,529	1,842	한국자산 신탁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스타타워 19층	
16	금남	대치	70-23	70-54	잡종지	23,142	2,625	한국자산 신탁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스 타워 19층	
17	금남	대치	70-17	70-49	답	57,001	496	하동군		
				70-50	답	57,001	975	하동군		
18	금남	대치	70-48	70-52	답	9,917	3,713	하동군		
19	금남	대치	70-15	70-44	잡종지	6,688	53	김영복	진주시 총의로 67, 505동 601호 (충무공동 혁신도시 내아파트)	
20	금남	대치	산120-18	산120-18	임야	231	231	하동군		
21	금남	대치	산120-10	산120-30	임야	2,692	526	하경미 등 3인	서울 용산구 백범로77길 21(원효로1가)	
22	금남	대치	산120-4	산120-29	임야	2,761	330	하동군		
23	금남	대치	70-16	70-45	잡종지	46,401	591	하동군		
24	금남	노량	산2-1	산2-1	도로	357	350	국	국토교통부	

하동군 공고 제2017-155호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안 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명칭을 변경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하동군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명칭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2장, 제4조 내지 제9조, 제12조,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4조)

-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변경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7년 2월 26일까지 하동군(참조 : 안전총괄과, 전화 880-2257, FAX 880-2249, bonde@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2장의 제목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을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을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지휘소”를 각각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를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합지휘소의”를 “통합지원본부의”로, “통합지휘소를”을 “통합지원본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통합지휘소”를 각각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6조 중 “통합지휘소와”를 “통합지원본부와”로, “통합지휘소에”를 “통합지원본부에”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지휘소”를 각각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를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합지휘소의 장”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통합지휘소의”를 “통합지원본부의”로, “통합지휘소에”를 “통합지원본부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12조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통합지휘소의 위치)”를 “(통합지원본부의 위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통합지휘소의 장”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통합지휘소”를 각각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16조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19조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통합지휘소 철수)”를 “(통합지원본부 철수)”로 하고, 같은 조 중 “통합지휘소의”를 “통합지원본부의”로, “통합지휘소를”을 “통합지원본부를”로 한다.

하 동 군 공 보

(16) 제 475 호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u>재난현장 통합지휘소</u>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u>통합지휘소</u>(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p> <p>4. ~ 6. (생략)</p> <p><u>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u></p> <p>제4조(<u>통합지휘소 설치·운영</u>)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p>	<p><u>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 ----- ----- ----- -- <u>통합지원본부</u>----- -----,</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 ----- ----- ---- <u>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u>----- -----,</p> <p>4. ~ 6. (현행과 같음)</p> <p><u>제2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u></p> <p>제4조(<u>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u>) ① -----</p>

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④ (생략)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대책본부장은 통합지휘소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휘소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2. (생략)

제8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도 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휘소의 위치, 통합지휘소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
- 통합지원본부와 -----
----- 통
합지원본부에 -----

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

② 통합지원본부-----

1. 2. (현행과 같음)

제8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 ① -----

----- 통
합지원본부의 장 -----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통합지휘소의 위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휘소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

---,

② 통합지원본부의 -----

----- 통합지원본부
에 -----,

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

-----,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

-----,
-----,

제14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① --

----- 통합지원본부
-----,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

-----,

제1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

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지휘하여야 한다.

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조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 통합지원
본부-----

② 통합지원본부-----

제16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

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

----- 통합지원본부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원본부-----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
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2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생
략)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
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통합지휘소 철수) 통합지휘
소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
합지휘소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위임
한다.

1. ~ 10. (생략)

-----,

제22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현행
과 같음)

② 통합지원본부-----

-----,

제23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
원본부의 -----
----- 통합
지원본부를 -----,

제24조(권한의 위임) -----

----- 통합지원본부-----
-----,

1. ~ 10. (현행과 같음)

하동군 공고 제2017-156호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안 이유

- 전 세계적 경제위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융자한도액을 확대하여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관계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

- 상위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른 상위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변경(안1조)
- 융자한도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안16조)

(24) 제 475 호

□ 시행규칙

○ 융자금 기 신청업체도 융자한도 내에서 추가로 융자신청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체” 조항에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체규모별 융자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의 단서 조항 삽입(안2조 2항 1호)

○ 융자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 중 [별표]의 시설현대화자금 확대 (안10조 2항)

자금용도별·업체규모별 융자한도액

[단위 : 백만원]

업체구분별 용도별	상시종업원수 5인미만 또는 자본금 1억원미만	상시종업원수 5인이상 또는 자본금 1억원이상	상시종업원수 10인이상 또는 자본금 2억원이상	상시종업원수20인이상 또는 자본금 3억원이상
일반운전자금	50	100	200	300
기술개발자금	50	100	200	300
시설현대화자금	50(100)	100(200)	200(300)	300(500)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7년 2월 26일까지 하동군(참조 : 미래전략과, 전화 880-2202, FAX 880-2869, nelong007@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 1.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3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4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와 「<u>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u>」 제43조에 따라 하동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융자금액 및 조건) ① (생략)</p> <p>② 융자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u>3억원</u>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p> <p>③ (생략)</p>	<p>제1조(목적)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 ----- ----- ----- ----- -----.</p> <p>제2조(융자금액 및 조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5억원</u>-----.</p> <p>③ (현행과 같음)</p>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업체”를 “업체.”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체규모별 융자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금용도별·업체규모별 용자한도액(제10조제2항 관련)

[단위 : 백만원]

업체구분별 용도별	상시종업원수 5인미만 또는 자본금 1억원미만	상시종업원수 5인이상 또는 자본금 1억원이상	상시종업원수 10인이상 또는 자본금 2억원이상	상시종업원수20인이상 또는 자본금 3억원이상
일반운전자금	50	100	200	300
기술개발자금	50	100	200	300
시설현대화자금	<u>100</u>	<u>200</u>	<u>300</u>	<u>500</u>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융자대상업체)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융자대상에 제외한다. 1. 조례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체 <u><단서 신설></u></p> <p>2. ~ 4.(생략)</p> <p>(별표) 자금용도별·업체규모별 융자한도액 (단위:백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font-size: small;">업체구분별 용도별</th> <th style="font-size: x-small;">상시종업원수 5인미만 또는 자본금 1억원 미만</th> <th style="font-size: x-small;">상시종업원수 5인이상 또는 자본금 1억원 이상</th> <th style="font-size: x-small;">상시종업원수 10인이상 또는 자본금 2억원 이상</th> <th style="font-size: x-small;">상시종업원수 20인이상 또는 자본금 3억원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일반 운전자금</td> <td>50</td> <td>100</td> <td>200</td> <td>300</td> </tr> <tr> <td>기술 개발자금</td> <td>50</td> <td>100</td> <td>200</td> <td>300</td> </tr> <tr> <td>시설 현대화자금</td> <td>50</td> <td>100</td> <td>200</td> <td>300</td> </tr> </tbody> </table>	업체구분별 용도별	상시종업원수 5인미만 또는 자본금 1억원 미만	상시종업원수 5인이상 또는 자본금 1억원 이상	상시종업원수 10인이상 또는 자본금 2억원 이상	상시종업원수 20인이상 또는 자본금 3억원 이상	일반 운전자금	50	100	200	300	기술 개발자금	50	100	200	300	시설 현대화자금	50	100	200	300	<p>제2조(융자대상업체) ① (현행과 같음) ② ----- -----.</p> <p>1. ----- -----.</p> <p>다만, 제10조 제2항에 따른 업체규모별 융자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2. ~ 4.(현행과 같음)</p> <p>(별표) <u>자금용도별·업체규모별 융자한도액(제10조제2항 관련)</u> (단위:백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font-size: small;">업체구분별 용도별</th> <th style="font-size: x-small;">상시종업원수 5인미만 또는 자본금 1억원 미만</th> <th style="font-size: x-small;">상시종업원수 5인이상 또는 자본금 1억원 이상</th> <th style="font-size: x-small;">상시종업원수 10인이상 또는 자본금 2억원 이상</th> <th style="font-size: x-small;">상시종업원수 20인이상 또는 자본금 3억원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일반 운전자금</td> <td>50</td> <td>100</td> <td>200</td> <td>300</td> </tr> <tr> <td>기술 개발자금</td> <td>50</td> <td>100</td> <td>200</td> <td>300</td> </tr> <tr> <td>시설 현대화자금</td> <td><u>100</u></td> <td><u>200</u></td> <td><u>300</u></td> <td><u>500</u></td> </tr> </tbody> </table>	업체구분별 용도별	상시종업원수 5인미만 또는 자본금 1억원 미만	상시종업원수 5인이상 또는 자본금 1억원 이상	상시종업원수 10인이상 또는 자본금 2억원 이상	상시종업원수 20인이상 또는 자본금 3억원 이상	일반 운전자금	50	100	200	300	기술 개발자금	50	100	200	300	시설 현대화자금	<u>100</u>	<u>200</u>	<u>300</u>	<u>500</u>
업체구분별 용도별	상시종업원수 5인미만 또는 자본금 1억원 미만	상시종업원수 5인이상 또는 자본금 1억원 이상	상시종업원수 10인이상 또는 자본금 2억원 이상	상시종업원수 20인이상 또는 자본금 3억원 이상																																					
일반 운전자금	50	100	200	300																																					
기술 개발자금	50	100	200	300																																					
시설 현대화자금	50	100	200	300																																					
업체구분별 용도별	상시종업원수 5인미만 또는 자본금 1억원 미만	상시종업원수 5인이상 또는 자본금 1억원 이상	상시종업원수 10인이상 또는 자본금 2억원 이상	상시종업원수 20인이상 또는 자본금 3억원 이상																																					
일반 운전자금	50	100	200	300																																					
기술 개발자금	50	100	200	300																																					
시설 현대화자금	<u>100</u>	<u>200</u>	<u>300</u>	<u>500</u>																																					

하동군 공고 제2017-201호

하동군 한다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한다사대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한다사대상 조례

2. 제안 이유

가. 현행 「하동군 한다사대상 조례」는 시상권자의 주체가 하동군수로 되어 있어 수상자 심사 및 결정, 시상에 있어 민간단체가 주체가 될 경우에는 현행 조례와 배치됨.

나. 한다사대상 수상자의 명예와 상의 품격 제고는 물론 상의 영속성 유지를 위하여 시상권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한다사”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시상권자 범위 확대 규정(안 제4조)

다. 수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대상자 심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심사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바.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7년 3월 6일까지 하동군(참조 : 기획조정실, 전화 880-2012, FAX 880-2019, ljm1472@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 하동군 한다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한다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한다사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다사”란 하동의 옛 지명으로 하동의 역사와 문화, 하동군민의 정신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시상권자)”를 “(시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수여하되, 다른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를 “하되, 제1조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 명의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다만, 단체에서 주관·시행하는 경우에는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 발전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

제6조 중 “한다)”를 “한다) 또는 주관하는 단체”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10조)제4항 중 “현저한 사유”를 “사유”로,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참여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를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11조) 중 “기획담당주사”를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지원 등) ① 군수는 한다사대상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다사대상 후보자 발굴 및 시상
2. 수상자의 명예와 상의 품격 제고를 위한 기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4조를 제1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명 하동군 한다사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에 있는 ‘한다사’는 하동의 옛 지명을 말하며, 하동의 역사와 문화, 하동군민의 정신을 담고 있음을 포괄적으로 정의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다사”란 하동의 옛 지명으로 하동의 역사와 문화, 하동군민의 정신을 말한다.</p>
<p>제4조(시상권자) 시상은 군수가 수여하되, 다른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시상 할 수 있다.</p>	<p>제4조(시상) ①-----하되, 제1조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명의로 -----.</p>
<p><신 설></p>	<p>②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p>
<p>제5조(수상자의 요건) ① 수상대상자는 제1조에 따라 크게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다만, 단체에서 주관·시행하는 경우에는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p> <p>제5조(수상자의 요건) ① ----- ----- -----.</p>
<p>1. (생 략)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p>	<p>1. (현행과 같음) 2. 군 발전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p>
<p>제6조(대상자 심사 등) 대상자 심사 및 시상절차, 시상시기, 수상자 결정 등은 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p>	<p>제6조(대상자 심사 등) ----- ----- ----- ----- 한다) 또는 주관하는 단체-----.</p>

제7조(시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하며,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위원회 또는 군수가 정한다.

제8조·제9조 (생략)

제10조(회의) ① ~ ③ (생략)

④ 위원 중 수상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수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참여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심사위원회 간사)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 (생략)

제13조(지원 등) ① 군수는 이 대상의 품격을 높이고 수상자를 기념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 추진 할 수 있다.

② 이 대상 운영과 관련하여 법인 등 단체설립을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 (생략)

<삭 제>

제7조·제8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제9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사유 -----
-----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 -----
----- 된다. -----

제10조(심사위원회 간사) -----

----- 업무 담당주사-----.

제11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2조(지원 등) ① 군수는 한다사대상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한다사대상 후보자 발굴 및 시상
- 2. 수상자의 명예와 상의 품격 제고를 위한 기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0 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저출산·고령화 및 이농에 따른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적정인구 확보를 위한 전입세대 및 다자녀(3명 이상) 가정이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할 경우 이용료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규정 추가(별표 2)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7년 3월 12일까지 하동군(참조 : 체육시설사업소, 전화 880-6442, FAX 880-2069, e-mail doo9687@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의 감면(별표 2)
3.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의 감면(제9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전액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및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의 대회 출전 훈련	전액	
하동군 방문 전지훈련 팀	전액	
하동군 체육회 가맹단체 및 하동군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연합회) 정기대회	전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또는 가족(유공자1명당 1명)의 경우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 한명을 포함한다)	50%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	
<u>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의 가족이 하동군으로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세대당 1명에 한하며 2년 동안 감경)</u>	<u>50%</u>	
<u>군에 주소를 둔 다자녀(3명 이상) 가정의 부모 또는 자녀</u>	<u>50%</u>	
군수가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액 또는 50%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별표]의 대상별 이용료 기준
기간회원이 3개월이상 동시 등록시	10%	
기간회원이 6개월이상 동시 등록시	20%	

※ 감면 적용은 일반 이용료 기준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의 감면(제9조 관련)

[별표2]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의 감면(제9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합인율)	비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전액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및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의 대회 출전 축원	전액	
하동군 방문 전지훈련 팀	전액	
하동군 체육회 가맹단체 및 하동군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연합회) 정기대회	전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또는 가족(유공자1명당 1명)의 경우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 한명을 포함한다)	50%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별표]의 대상별 이용료 기준
군수가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액 또는 50%	
기간회원이 3개월이상 동시 등록시	10%	
기간회원이 6개월이상 동시 등록시	20%	

※ 감면 적용은 일반 이용료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감면율 (합인율)	비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전액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및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의 대회 출전 축원	전액	
하동군 방문 전지훈련 팀	전액	
하동군 체육회 가맹단체 및 하동군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연합회) 정기대회	전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또는 가족(유공자1명당 1명)의 경우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 한명을 포함한다)	50%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의 가족이 하동군으로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세대당 1명에 한하며 2년 동안 감경)	50%	
군에 귀소를 둔 다자녀(3명 이상) 가정의 부모 또는 자녀	50%	
군수가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액 또는 50%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별표]의 대상별 이용료 기준
기간회원이 3개월이상 동시 등록시	10%	
기간회원이 6개월이상 동시 등록시	20%	

※ 감면 적용은 일반 이용료 기준으로 한다.

하동군 공고 제 2017 - 162호

2017년 양식시설현대화사업 모집공고

해양수산 보조 및 용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17년 2월 7일

하 동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지원규모, 지원조건

회계명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원)					비고
			계	용자금		자 담		
					%		%	
용자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내 수 면)	3개소	420,000,000	336,000,000	80	84,000,000	20	

※ 지원조건 : 용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분할 상환), 자담 20%
사업량은 사업신청 금액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 양식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자
- 기존 양식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자
- 신용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보능력을 갖춘 자
- 사업자별 사업비 총액의 2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별표 1】 양식어업별 시설 및 장비 등 대상시설물 현황 참조

3. 신청기간 : 2017. 2. 8. ~ 2017. 2. 17.

4. 신청서 제출기관 : 하동군 경제수산과

5. 신청시 구비서류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 【별지 3】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 지원신청서 【별지 5】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 【별지 5】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 【별지 4】
 - ※ 반드시 대출기관과 협의 후 융자 가능액 기재 후 제출
- 양식관련 허가증(면허, 신고) 사본
- 시설부지를 요하는 사업 : 부지확보증명서 또는 부지사용승낙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 기타 - 사업지침별 지원자격 및 요건 참조

6. 지원대상자 우선순위선정절차

- 2017년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시행지침 별표 2의 우선순위에 의함

7. 기 타

수산사업 집행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수산사업 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 임 : 2017년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집행지침 1부. 끝.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

▶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경상남도 어업진흥과 또는 하동군 경제수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오광석	044-200-5630
		사무관 우윤필	044-200-5642
		사무관 김영진	044-200-5637
경상남도	어업진흥과	사무관 노영학	055-211-4022
		담당자 김형안	055-211-4024
하 동 군	경제수산과	담당주사 이광재	055-880-2452
		담당자 김정환	055-880-2453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해면 및 내수면 양식어업인들에게 양식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 생활 안정에 기여

2. 기본방향

- 자유무역협정 체결 가속화에 따른 시장 완전개방 이전에 고부가가치의 양식 품종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대화된 양식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
- 양식 수산물의 위생안전 확보, 생산성 향상 및 경영 개선을 위해 친환경양식시스템 및 첨단 자동화 시스템 시설로 개량

3.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 * 농어업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 확대 촉진

하 동 군 공 보

(46) 제 475 호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수산업법 제54조(기르는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르는어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기르는 어업에 관하여 개발된 기술의 사업을 하려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내수면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4. 2017년도 성과목표

- 양식어업인의 노후화된 양식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 생활 안정

5. 연차별 재정투입 계획(전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5까지	'16	'17계획	'18계획
사업물량(개소)	1,890	1,040	250	300	300
이차보전	-	13,851	4,764	6,259	-
사업비 계	561,000	336,000	75,000	75,000	75,000
융자지원(수협은행)	448,800	268,800	60,000	60,000	60,000
자부담	112,200	67,200	15,000	15,000	15,000

※ 융자금은 수협은행이 부담하고 정부는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와의 차이를 보조

6. 2017년 지원규모(전국)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지원규모 (개소)	지 원 액		
		계	융자	자담
계	300	75,000	60,000	15,000
해면양식 및 육상양식·종묘생산시설	220	56,250	45,000	11,250
내수면양식시설	80	18,750	15,000	3,750

※ 지원규모 : 해면:내수면=8:2, 지자체 수요조사결과에 따라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II.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해면양식업자)
 - 제8조에 의한 면허(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를 받은 자(한정어업면허 포함)
 - 수산업법 제33조에 의한 행사계약에 의한 어업권자도 포함
 - 제41조 제3항에 의한 허가(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를 받은 자
 - 허가를 받아 양식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도 포함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허가·신고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내수면양식업자)
 - 신고를 하고 양식장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도 포함
- 개인어장을 대상으로 하되, 어촌계·영어조합법인·내수면어업계 등 생산자단체의 양식장 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2인이상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의 동의 필요)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 양식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
- 기존 양식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자
- 신용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보능력을 갖춘 자
- 사업자별 사업비 총액의 2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나. 제외대상

-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 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된 자
- 뱀장어 기존 양식시설 면적의 확장 및 창업 등 신규 사업자. 다만, 동아시아 실뱀장어 자원보호 차원에서 기존 양식장 개보수에 한하여 지원
- 최근 5년내 정부지원사업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사용이 확인된 자

하 동 군 공 보

(48) 제 475 호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 「수산생물질 병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3. 지원대상

-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 양식어업별 지원대상 시설 및 장비 현황(별표 1)
 - 양식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를 우선하고 부대시설 및 부대장비는 주시설 및 장비가 없는 경우에 대신함
 - 어업인 주택 및 종사자 숙소 등 관리사는 제외

4. 지원한도

구 분	사업비 지원한도		
	총사업비	용자지원	본인부담
신 설	80억원이하	64억원이하	16억원이하
증설 또는 개보수	50억원이하	40억원이하	10억원이하

※ 지자체 실정에 따라 지원한도 하한선 지정 가능

5. 지원조건

- 용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분할 상환), 자담 20%

6. 사업추진기관별 역할

- 사업총괄기관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자금지원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 : 시·도지사(시·군)
- 대출취급기관 :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

Ⅲ. 사업시행방법 및 절차

1. 사업계획 단계

가. 사업집행지침 시달 및 사업물량 배정

-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이차보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지사 및 수협은행장에게 시달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양식어업 면허·허가건수 및 어장면적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사업물량 및 용자금을 배정(별지 1)한다.

나. 사업 계획의 수립·시달

- 시·도지사는 용자금 배정액 및 사업 배정물량에 따라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시달한다.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별지 2)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가. 사업신청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별지 3)를 대출취급기관에 제공하고 대출취급기관은 동 계획서 검토 후 어업인에게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를 발급하여야 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 발급 시 반드시 용자 가능액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양식관련 허가증(면허·신고) 사본,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별지 3),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를 구비하여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용자금 지원신청서(별지 5)와 함께 시·군에 신청한다.
 - 다만, 양식 관련 허가 예정자로 양식관련 허가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사업의 사후 관리기간에 준하는 양식시설 예정 건축물 또는 부지의 사용가능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 선정 및 통보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별표 2)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50% 범위 내에서 예비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다만, 지자체 양식어업여건에 따라 (별표 2) 외의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시장·군수는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한다.
- 시장·군수는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 상의 용자가능액을 참고하여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용자 지원) 한도를 산정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예비대상자 또는 신규대상자로 대체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사업지원신청 수요를 바탕으로 어장여건이나 지역특성에 따라 시설의 내역, 규모 및 단가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지원개소, 지원규모 및 사업신청자 경합 시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 중 사업이 사전에 착수된 경우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다만, 전년도 사업자 중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출기한 연장신청을 일실한 사업자에 한하여 시장·군수는 현지·확인 점검을 통해 사업완료 여부와 대출기한 연장 미신청 사유 등을 확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전년도 사업자가 재선정되는 경우는 양식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 등을 전년도 제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3. 사업비 집행단계

가. 용자신청·지급

- 시장·군수는 최종 사업대상자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6)를 제출하면 사업 이행상태를 확인한 후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6)를 발급한다.
- 최종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6),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용자신청서(별지 7)를 작성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용자금을 신청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신용도, 담보능력 등을 확인한 후 사업대상자별 사업비의 80%를 용자금으로 지급한다.
 - 용자금의 대출에 관한 사항은 수협은행 여신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나. 이차보전금 지급신청·지급

- 대출취급기관인 수협은행은 매월 익일 10일까지 용자금 지원규모에 맞춰 사업총괄기관(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에 이차보전금 교부결정 및 확정신청서(별지 8)와 관련 근거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다.

- 사업총괄기관(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은 이차보전금 교부결정 및 확정신청서(별지 8)를 검토하여 자금지원부서(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에 이차보전금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을 요구한다.
- 자금지원부서는 수협은행장에게 이차보전금 교부결정 및 자금을 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총괄기관에 통보한다.

4. 사업결과 관리단계

- 용자금 지원결과 보고
 - 수협은행장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용자금 지원결과 및 이차보전 집행결과(별지 9)를 사업총괄기관(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와 사업집행주체(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 시장·군수는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사업추진실적(별지 10)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사업추진실적(별지 10)을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IV. 행정사항

1. 사업관리

- 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당해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장·군수는 관리감독자로서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이 지원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감독한다.
-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연 2회이상(상·하반기 각 1회) 현지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후 3개월이내 사업 미착수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2.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필요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사후관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시장·군수 및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지원된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대출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12월중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물량배정 등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건립된 시설 및 장비 등은 다음의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양식시설 현대화지원	○ 기계·장비, 파이프 등 ○ 건축물	○ 5년 ○ 10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3. 사업추진일정

-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양수산부) : '16. 12월
- 세부사업시행지침 작성 시달(시·도지사) : '16. 12월
- 사업수요조사(해양수산부, 시·도지사, 시장·군수) : '16. 12월
- 사업물량 배정(해양수산부, 시·도지사) : '17. 1월
* 용자실행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시·도(시·군)간 사업물량 조정 배정
- 사업계획 공고(시장·군수) : '17. 1월~계속
-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시장·군수) : '17. 1월~계속
- 융자금 지원신청 및 융자금 지급 : '17. 1월~계속
- 대상 사업자 및 사업규모 확정 : '17. 3. 31
- 사업자 선정현황 및 추가 사업수요 제출 : '17. 4. 5
- 사업물량 재배정(해양수산부, 시·도지사) : '17. 4. 7

4.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적법·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별표 1]

양식어업별 시설 및 장비 등 대상시설물 현황

구분	양식대상	양식방법	현대화사업 대상시설 및 장비	
공 통			관리선, 선별·포장기, 건조기, 냉동장치, 특수차량, 보안용CCTV	
해면 양식 주시설 및 장비	면허	해조류양식	수하식, 바닥식	밧줄, 지주목, 부자, 닻 등
		패류양식	수하식	밧줄, 지주목, 부자, 닻 등
			살포식, 투석식	투석용 돌
			침하식	가두리구조물, 로프, 부이, 닻 등
			가두리식	가두리구조물, 로프, 브이, 닻, 작업바지선 등
		어류등양식	가두리식	가두리구조물, 로프, 브이, 닻, 작업바지선, 사료저장고(배합사료만 해당), 등
			축제식	축제시설, 작업장 건물 등
			수하식	밧줄, 지주목, 부자, 닻 등
	바닥식		구획시설	
	허가	육상해수양식	수조식	수조, 침전조, 정화조, 사료저장고(배합사료만 해당), 건축물 및 전기, 수도 설비, 해수 인입, 배수 시설, 양식용 파이프, 자동급이시설, 수온·산소 자동점검장치, 살균시설, 보일러, 산소공급장치 등
			축제식	축제시설, 작업장 건물 등
		종묘생산	수조식	수조, 침전조, 정화조, 사료저장고 건축물 및 전기, 수도 설비 해수 인입, 배수 시설, 양식용 파이프 자동급이시설, 수온·산소 자동점검장치, 살균시설, 보일러, 산소공급장치 등
			축제식	축제시설, 작업장 건물 등
			밧줄식, 말목식, 뗏목식	밧줄, 지주목, 부자, 닻 등
내수면 양식 주시설 및 장비		신고	육상양식 (양성 및 종묘생산)	수조식
	노지식		담수 인입 및 배수 시설, 자동급이시설, 수온·산소 자동점검장치, 산소공급장치, 관정, 다목적 저온저장고(사료저장고), 사료배합기, 발전기 등	

※ 공통시설 및 장비는 해면양식 및 내수면양식 주시설 및 장비의 후순위로 함
 ※ 위에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양식장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해당됨
 ※ 관리선 및 장비는 신조 및 새로운 장비구입에 한함.

(54) 제 475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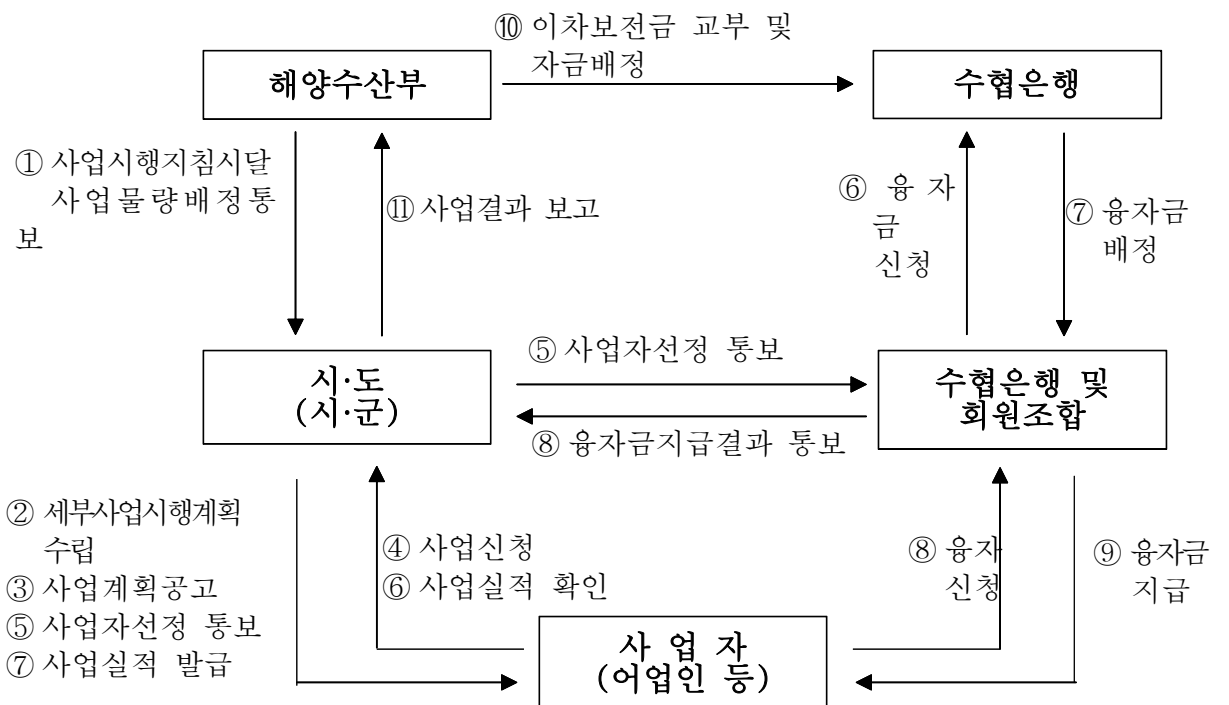
[별표 2]

사업신청자 경합 시 우선순위

구 분	우 선 순 위
공통사항	○ FTA로 영향은 받았거나 받을 것이 예상되는 품목 생산자 ○ 수출주력 품목 생산자
해면양식 및 육상양식·종묘생산 시설	1.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은 자 2.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으로 양식시설을 설치한 자 3. 양식장을 HACCP 시설로 등록한 자 4.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사업 참여자 5. 수산물이력제에 가입한 자 또는 자조금 사업 참여자 6.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인버터)을 설치한 자 ※ 동일순위자간 우선순위는 허가된 수면적이 적은 자
내수면양식	1.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은 자 2. 양식장을 HACCP 시설로 등록한 자 3. 수산통계 모니터링 참여자 4. 수산물이력제에 가입한 자 또는 자조금사업 참여자 5.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인버터)을 설치한 자 ※ 동일순위자간 우선순위는 허가된 수면적이 적은 자

[별표 3]

사업 추진체계



< 별지 2 >

(시·군)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

1. 사업의 개요

- 사업목적
- 지원내용
- 융자금 지원규모
- 융자금 지원조건 및 상환방법

2. 신청자격 요건 및 제외대상

○

3.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및 제출서류

○

4. 사업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5. 기타 유의사항

년 월 일

()시장·군수

< 별지 3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

1. 사업개요

- 신축 또는 개보수 여부
- 시설 개량 또는 장비 교체 등

2. 자산 및 부채

(단위 : 천원)

자 산			부 채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계						

※ 자산 : 부동산, 동산, 예적금, 공채(보험)

※ 부채 : 금융거래확인서상 부채

3. 사업비 부담계획

(단위 : 천원)

총액	용자지원금	자부담	자부담 조달계획

※자부담 조달계획 구체적 작성 및 근거서류 제출

하 동 군 공 보

(58) 제 475 호

4. 사업비 명세

품 명	규 격	단 가	수 량	금 액 (천원)	비 고
계					

5. 사업추진일정

- 공사착수예정일
- 공사준공예정일
- 용자금 요청시기 : 년 월 일
- 준공후 결과 보고일 :

6. 제출서류

- 부동산 및 동산 등 제공담보 관련 서류 일체
 - 담보제공 가능한 부동산(동산)목록, 등기부등본 등
- 금융거래확인서
- 자부담 관련 서류

< 별지 4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

(년 월 일 기준)

1.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 사실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유	무	연체금액	유	무	유	무

3. 소요금액

사 업 명	총사업비(㉠+㉡)	㉠융자(80%)	㉡자담(20%)

4. 융자가능액(㉠+㉡+㉢) : 천원

㉠ 동산 · 부동산

담 보 종 류	감정가액①	담보인정비율②	선순위 설정금액③	융자가능금액 (①*②-③)

* 담보대출의 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 감정가액은 탁상감정으로 평가

㉡ 보증서

담 보 종 류	보증한도	한도산정	비 고
간이신용	5천만원 이내		
일반신용	3억원 이내		
정식신용	3억원 초과시		

※ 농신보 보증센터 보증서로 갈음 가능

하 동 군 공 보

(60) 제 475 호

㉔ 기타담보

담 보 종 류	담 보 가 액	대출가능금액	비 고

5. 유의사항

- 행정기관의 사업자 선정이후 대출신청 시점에서 정부지침 또는 대출취급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한 정식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대출적격 여부 심사에 의해 대출가부가 최종 결정 됨

년 월 일

()수산업협동조합장 (인)

수협은행() 지점장 (인)

< 별지 5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 지원신청서

양식어가 (단체)명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 번호	() -	
주 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양식장 주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양식어종				
양식장면적 (신청일 기준)	(면허·허가 신고)면적	m ²	양식방법	
	수면적	m ²		
사 업 명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사 업 비 (천원)	계 (100%)	융자신청액 (80%)	자부담 (20%)	비 고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첨부서류 : 1. 양식업 관련 허가증(면허·신고) 사본 1부.
 2. 양식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3. 사업자선정용신용조사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 ○ 시장·군수 귀하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청하는 경우 연체 신용관리대상 거래처, 주사업장 권리침해 등 보증제한 사항 없이 보증심사기준을 충족하여야 지원가능함. (개인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보증한도 산정)

< 별지 7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용자신청서

양식어가명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 번호	() -
주 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양식장 주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양식어종					
양식장면적 (신청일 기준)	(면허·허가·신고)면 적	m ²	양식방법		
	수면적	m ²			
사 업 명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사 업 비 (천원)	계	용자신청액	자부담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용자금 지원을 요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수협은행() 지점장 귀하

※ 귀하의 신용도 또는 담보제공 능력에 따라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 별지 8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이차보전금 교부결정 및 확정신청서

- 1. 신청자의 주소 및 명칭
- 2. 사 업 명 :
- 3. 사업시행기간 :
- 4. 보전사업의 목적 및 내용
 - 가. 목적
 - 나. 내용

- 5. 보전금 교부신청내용
 - 가. 총 요구잔액(A) :
 - 나. 기 수령액(B) :
 - 다. 금차 교부신청액(A-B) :

위와 같이 년 월 일 ~ 년 월 일 기간 중 운용분 양식시설 현대화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위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및 확정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1. 이차보전금 교부결정 및 확정신청액 계산내역서
- 2. 계좌이체 지정 의뢰서
 - 3.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액 총괄표

년 월 일

신청자의 주소 :

수협은행 은행장 000

< 별지 9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용자지원 및 이차보전 집행결과(분기)

1. 용자지원 현황

(단위 : %, 천원)

시·도	시군	양 식 어가명	성명	용자금 (A)	용자지원내역			
					실 용자금 (B)	용 자 실행율 (B/A)	최초 용자일 (년월일)	용 자 만기일 (년월일)
합계								
	소계							

2. 이차보전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2016년 예산 (A)	계 (B+C)	기집행액 (B)	해당분기 (C)	집행율 ((B+C)/A*100)

* 작성파일 : 한글 또는 엑셀

< 별지 10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지원결과(분기)

1. 총괄

(단위 : 천원)

시·도 (시·군)	구분	지원건수 (건)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내역			
			총사업비			실용자금
			계 (A+B)	용자금 (80%)(A)	자부담 (20%)(B)	
	해면					
	내수면					

2. 사업대상자별 지원실적

(단위 : %, 천원)

시군	양식 어가명	성 명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내역									
			해면 · 내수면	어업 종류	사업 내용	총사업비			용자지원		최초 용자일 (년월일)	용자 만기일 (년월일)
						계 (A+B)	용자금 (80%) (A)	자부담 (20%) (B)	실 용자금 (C)	실 용자율 (C/A)		
계												

* 작성 시 유의사항

- 어업종류 :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등 인허가사항 작성
- 사업내용 : 양식대상 수생생물을 포함, 00양식시설 신축 또는 00양식시설 개보수 또는 00장비 교체(도입)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작성파일 : 한글 또는 엑셀

소하천정비 사업시행 변경 공고

하동군 공고 제2017 - 192호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소하천정비 사업시행(사생골천)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3일

하동군수

소하천명	사업 개요									비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k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는지점	끝나는지점	축제(築堤)	호안(護岸)	기타	착공	준공		
사생골천	사 생 골 천 정 비 사 업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159-2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106-2	0.75	0.75	낙차보 4개소, BOX교 2개소 등	2017. 1.	2018. 12.	소하천 정비	토지, 지장물 1식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사생골천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1. 소하천 정비공사의 명칭 : 사생골천 정비사업
2. 소하천 공사의 목적 및 개요
 - 가. 소하천공사의 목적
 - 해당 지역의 소하천을 정비하여 자연재해(집중호우, 태풍내습)시 발생할 수 있는 주변지역 농경지 및 주택 침수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여건 제공 및 지역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소하천공사의 개요
 - 위 치 : 경남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159-2 ~ 사평리 106-2번지
 - 사 업 량 : 축제 및 호안 L=0.75km, 교량 2개소 등
 - 사 업 비 : 2,000백만원
3. 소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남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159-2번지 ~ 사평리 106-2번지
4. 소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하동군수
 - 주 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번지
5. 소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17. 1. ~ 2018. 12.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붙임3) 참조
7. 준공된 소하천 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자 : 하동군수(안전총괄과)

8. 폐천부지 발생 예상면적 : 해당없음

9. 실시설계도서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담당 비치

10. 예정공정표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4개월(730일)로 한다.

11.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금액 : 백만원)

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2,030	30	200	1,800	

12. 소하천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계획

가.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 이의신청 :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상시기 절차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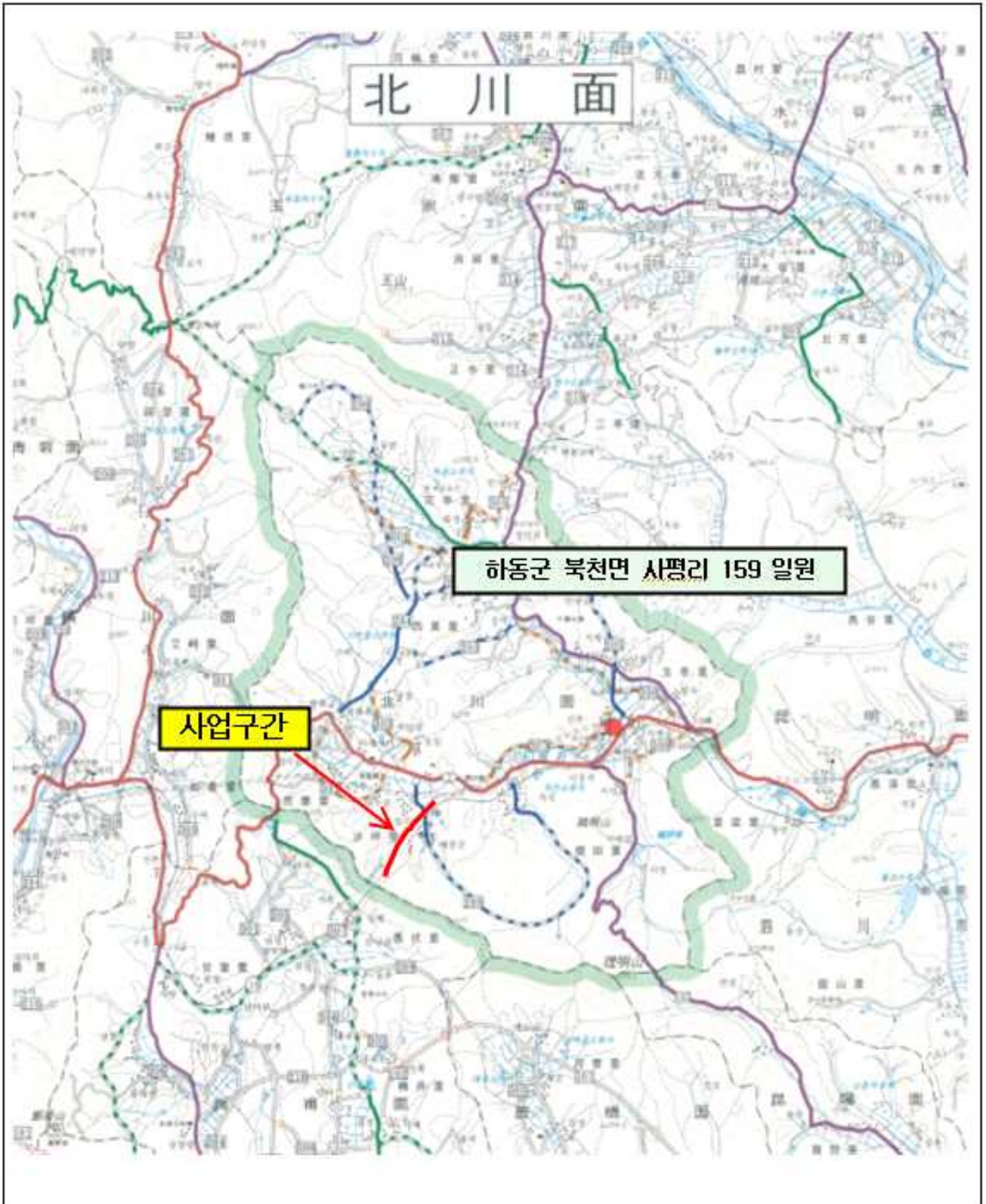
- 보상절차 및 방법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에서 소유자와 계약 체결 후 보상금 지급
- 보상가액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가액의 산출평균치

13. 기타사항

-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055 - 880 - 2532~4)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위 치 도

SCALE = 1 : 50,000



< 사생골천 정비사업 편입토지 조서 >

편 입 용 지 조 서 (국 · 공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 적	소 유 자	
	군	면	리					성 명	주소
1	하동	북천	사평	1241-2	구	5,526	3,132	국(국토교통부)	
2	하동	북천	사평	159-1	구	861	185	하동농지개발조합	
3	하동	북천	사평	176-1	구	176	88	하동농지개발조합	
4	하동	북천	사평	177-1	구	236	69	국(농림축산식품부)	
5	하동	북천	사평	178-1	답	42	42	하동군	
6	하동	북천	사평	158-2	답	43	43	하동군	
7	하동	북천	사평	산 124-8	임	281	281	하동군	
8	하동	북천	사평	158-1	답	18	18	하동군	
9	하동	북천	사평	181-1	전	104	104	하동군	
10	하동	북천	사평	126-2	답	50	50	하동군	
11	하동	북천	사평	산 124-9	임	1,208	1,143	하동군	
12	하동	북천	사평	1242	도	2,598	142	국(국토교통부)	
13	하동	북천	사평	126-1	도	35	35	하동군	
14	하동	북천	사평	1243	도	1,008	69	국(국토교통부)	
15	하동	북천	사평	127-4	도	198	95	하동군	
16	하동	북천	사평	119-1	도	27	27	하동군	
17	하동	북천	사평	120-1	도	15	11	하동군	
18	하동	북천	사평	121-1	도	45	45	하동군	
19	하동	북천	사평	116-1	도	6	1	하동군	
20	하동	북천	사평	117-1	도	15	15	하동군	
21	하동	북천	사평	114-1	도	20	7	하동군	

하 동 군 공 보

(72) 제 475 호

편 입 용 지 조 서 (국 · 공 유 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 적	소 유 자	
	군	면	리					성 명	주소
22	하동	북천	사평	83-1	도	71	71	하동군	
23	하동	북천	사평	109-2	철	6,280	953	국(국토교통부)	
24	하동	북천	사평	1241-3	구	1,888	1,443	국(국토교통부)	
25	하동	북천	사평	130-2	철	2,743	30	국(국토교통부)	
26	하동	북천	사평	108-1	도	36	5	하동농지개발조합	
27	하동	북천	사평	1239-3	도		1		
28	하동	북천	사평	130-8	도	53	1	하동군	
29	하동	북천	사평	131-4	도	37	6	하동농지개발조합	
30	하동	북천	사평	104-2	전	26	26	국(국토교통부)	
31	하동	북천	사평	107-5	임	440	357	국(국토교통부)	
32	하동	북천	사평	1220	천	12,950	16	국(국토교통부)	

하 동 군 공 보

(73) 제 475 호

편 입 용 지 조 서 (사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당초)	편입면적 (수정)	소 유 자	
	군	면	리						성 명	주 소
1	하동	북천	사평	159	답	2,563	65	99	김명선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271-2 산호맨션 3동 502호
2	하동	북천	사평	177	답	1,334	259	228	정재승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78
3	하동	북천	사평	산124-1	임	7,042	410	388	정성중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78
4	하동	북천	사평	178	답	408	216	208	정재승	하동군 북천면 배안골길 94
5	하동	북천	사평	179	임	40	6	0	김태자	부산 동래구 인락동 631-56
6	하동	북천	사평	158	답	1,473	1,473	1,473	정재승	하동군 북천면 배안골길 94
7	하동	북천	사평	180	임	400	294	400	정재승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78
8	하동	북천	사평	181	전	541	541	541	정재승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78
9	하동	북천	사평	155-1	임	7,521	295	305	정재승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78
10	하동	북천	사평	182	답	112	112	112	정재승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78
11	하동	북천	사평	152	전	615	76	70	김영우	부산 사하구 괴정동 11-2 한일하나로아파트 3동 207호
12	하동	북천	사평	산124-3	임	1,371	1,371	1,371	정재승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78
13	하동	북천	사평	126	답	3,089	3,089	3,089	정재승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78
14	하동	북천	사평	120	답	2,392	158	541	정재안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78
15	하동	북천	사평	127-3	답	1,465	294	312	문영조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34
16	하동	북천	사평	121	임	610	76	104	정재호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78
17	하동	북천	사평	115	답	23	23	23	김용원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1000 금산향한골든빌 118동 1004호
18	하동	북천	사평	83	답	316	316	316	정재승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78
19	하동	북천	사평	119	답	390	390	390	김용원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1000 금산향한골든빌 118동 1004호
20	하동	북천	사평	118	임	1,547	285	250	정순재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411
21	하동	북천	사평	109-1	답	3,193	175	243	김임태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712 관악드림타운 114-201

하 동 군 공 보

(74) 제 475 호

편 입 용 지 조 서 (사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 면적 (당초)	편입 면적 (수정)	소 유 자	
	군	면	리						성 명	주 소
22	하동	북천	사평	130-3	답	804	61	29	신동국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360 현대아파트 110동 1202호
23	하동	북천	사평	108	답	744	262	308	신동국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360 현대아파트 110동 1202호
24	하동	북천	사평	131-3	답	1,345	92	92	신동국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360 현대아파트 110동 1202호
25	하동	북천	사평	107-7	임	366	176	196	송재용	부산 북구 주례동 316 대성아파트 2동 609호
26	하동	북천	사평	104-1	전	774	55	70	이수현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965-1 금산아이파크 104동 1304호
27	하동	북천	사평	107-6	임	376	7	18	송기성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72
28	하동	북천	사평	106-4	답	278	31	46	김용원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1000 금산홍한골든빌 111동 703호
29	하동	북천	사평	106-3	답	291	228	228	김용원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1000 금산홍한골든빌 111동 703호
30	하동	북천	사평	107-4	임	1,620	17	9	문영조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42
31	하동	북천	사평	106-2	답	423	21	14	김용원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1000 금산홍한골든빌 111동 703호

소하천정비 사업시행 변경 공고

하동군 공고 제2017 - 192호

「소하천정비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소하천 정비 시행계획(지소뒀골천 정비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3일

하동군수

소하천명	사업 개요									비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k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는지점	끝나는지점	축제(築堤)	호안(護岸)	기타	착공	준공		
지소뒀골천	지소뒀골천 정비사업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711-15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982-1	1.2km	1.2km	BOX교 5개소 등	2017. 1.	2017. 12.	소하천 정비	토지, 지장물 1식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지소뒯골천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1. 소하천 정비공사의 명칭 : 지소뒯골천 정비사업
2. 소하천 공사의 목적 및 개요
 - 가. 소하천공사의 목적
 - 해당 지역의 소하천을 정비하여 자연재해(집중호우, 태풍내습)시 발생할 수 있는 주변지역 농경지 및 주택 침수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여건 제공 및 지역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소하천공사의 개요
 - 위 치 :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711-15 ~ 성천리 982-1번지
 - 사 업 량 : 축제 및 호안 L=1.2km, 교량 5개소 등
 - 사 업 비 : 2,000백만원
3. 소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남 하동군 북천면 고전면 성천리 711-15 ~ 성천리 982-1번지
4. 소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하동군수
 - 주 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번지
5. 소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17. 1. ~ 2017. 12.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붙임3) 참조
7. 준공된 소하천 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자 : 하동군수(안전총괄과)

8. 폐천부지 발생 예상면적 : 해당없음

9. 실시설계도서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담당 비치

10. 예정공정표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365일)로 한다.

11.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금액 : 백만원)

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2,030	30	200	1,800	

12. 소하천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계획

가.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 이의신청 :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상시기 절차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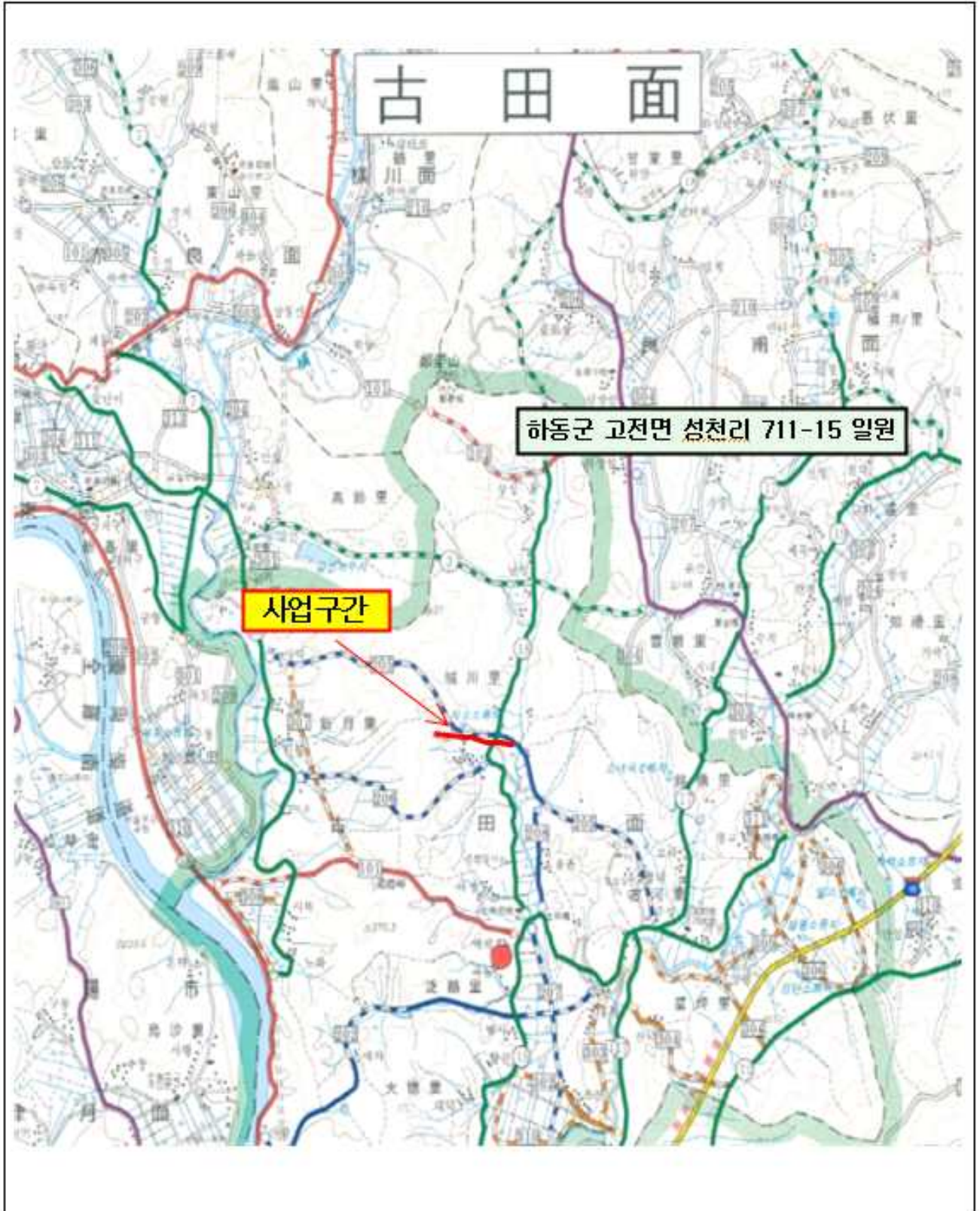
- 보상절차 및 방법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에서 소유자와 계약 체결 후 보상금 지급
- 보상가액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가액의 산출평균치

13. 기타사항

-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055 - 880 - 2532~4)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위 치 도

SCALE = 1 : 50,000



< 지소뒯골천 정비사업 편입토지 조서 >

편 입 용 지 조 서 (국·공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군	면	리					성 명	주 소
1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746-2	도 로	188	155	국	농림수산부
2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746-1	도 로	415	395	국	농림수산부
3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746	도 로	68	68	국	농림수산부
4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226	도 로	1,243	9	국	농림수산부
5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45-5	도 로	272	15	하동군	
6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711-15	답	1,120	8	하동군	경상남도
7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711-17	답	28	16	하동군	경상남도
8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743-1	구 거	2,196	1,335	국	농림수산부
9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51	도 로	676	598	국	농림수산부
10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218	도 로	3,415	24	국	국토교통부
11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201-28	구 거	3,855	2,314	국	국토교통부

하 동 군 공 보

(80) 제 475 호

편 입 용 지 조 서 (사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 면적 (당초)	편입 면적 (수정)	소 유 자	
	군	면	리						성 명	주소
1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747-3	답	210	20	37	강균현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64
2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46-3	도로	7	3	1	정구현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700
3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45-2	대지	1,253	11	18	강위본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10길 6 한솔A 201-504
4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45-6	대지	58	10	15	임영실	포항시 북구 용흥동 57-2 현대A 104-501
5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44-1	대지	568	39	46	임영실	포항시 북구 용흥동 57-2 현대A 104-501
6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44	대지	827	65	67	임영실	포항시 북구 용흥동 57-2 현대A 104-501
7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43	대지	519	18	23	영일 정씨	영일정씨 도암공파원모제종회
8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42	답	260	69	69	임영실	포항시 북구 용흥동 57-2 현대A 104-501
9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41	답	960	89	14	임영실	포항시 북구 용흥동 57-2 현대A 104-501
10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37	답	2,274	435	420	노자영	전남 광양시 진등길 55-5 송보파인빌5차A 506-701
11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31-3	답	856	374	387	김용 외 1인	울산시 중구 복산동 611 복산맨션A 4-111
12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31-1	답	509	243	242	김대술	경남 하동군 고전면 지소2길 16
13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31-2	답	258	70	73	하성진	경남 하동군 고전면 명교리 436
14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711-20	답	8	8	8	김용현	진주시 옥봉남동 561
15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711-14	답	626	15	18	김용현	진주시 옥봉남동 561
16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711-6	답	3,222	40	47	김재윤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121
17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711-5	답	654	15	13	김재윤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121

하 동 군 공 보

(81) 제 475 호

18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711-4	답	1,480	62	43	김대범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64
19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711-13	답	931	6	5	박종문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65
20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711-1	답	1,349	46	43	박종문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65
21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50	답	168	16	16	정봉화 외 2인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45
22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47-3	도로	23	16	11	송명호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948
23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26-1	도로	40	5	2	김을용	창원시 사파동 35브룩 13노트
24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26-3	도로	63	33	32	김을용	창원시 사파동 35브룩 13노트
25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26-2	답	294	179	174	노정훈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44
26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27-3	답	1,825	576	563	노정훈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44
27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27-2	답	1,742	437	451	노정훈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44
28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28-1	전	2,668	74	81	강위정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82 한양A 106-407
29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29	답	1,091	380	399	노자영	전남 광양시 진통길 55-5 송보파인빌5차A 506-701
30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30	답	879	149	156	김재문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919
31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982-1	답	2,245	229	242	김재호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121
32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711-2	답	4,938	13	9	김대범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64

하동군 공고 제2017 - 194호

사생골천 정비사업 보상계획 및 변경 공고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사생골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변경 공고하오니, 금회 보상구간에 포함되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2월 13일

하 동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사생골천 정비사업
- 나. 위 치 : 경남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159-2 ~ 106-2번지 일원
- 다. 사 업 량 : 하천정비 L=750m
- 라. 사업기간 : 2017. 01. ~ 2018. 12.
- 마.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 : 붙임 편입조서 참조

3. 토지·물건조서의 열람

- 가. 열람기간 : 2017년 02월 13일 ~ 02월 27일(14일간)
- 나. 열람장소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및 하동군 홈페이지
- 다. 기타문의: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055-880-2532~4)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2017년 1월 ~

나. 보상금의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함

다. 보상방법 : 협의 성립 후 현금보상(계좌입금), 압류 및 근저당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토지소유자가 해제 후 계약체결 원칙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계약체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 현금(계좌) 지급

5. 감정평가업자 선정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옹진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기 타

가. 토지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되었을 경우 보상에서 제외하고, 누락되었을 경우 실사를 거쳐 보상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참고로,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지적법에 따라 분할 예정이며 예상편입면적과 확정면적은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보상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장소 및 보상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추어 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개인별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다. 토지 및 물건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송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055-880-2532~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 동 군 공 보

(84) 제 475 호

< 사생골천 정비사업 편입토지 조서 >

편 입 용 지 조 서 (국 · 공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 적	소 유 자	
	군	면	리					성 명	주소
1	하동	북천	사평	1241-2	구	5,526	3,132	국(국토교통부)	
2	하동	북천	사평	159-1	구	861	185	하동농지개발조합	
3	하동	북천	사평	176-1	구	176	88	하동농지개발조합	
4	하동	북천	사평	177-1	구	236	69	국(농림축산식품부)	
5	하동	북천	사평	178-1	답	42	42	하동군	
6	하동	북천	사평	158-2	답	43	43	하동군	
7	하동	북천	사평	산 124-8	임	281	281	하동군	
8	하동	북천	사평	158-1	답	18	18	하동군	
9	하동	북천	사평	181-1	전	104	104	하동군	
10	하동	북천	사평	126-2	답	50	50	하동군	
11	하동	북천	사평	산 124-9	임	1,208	1,143	하동군	
12	하동	북천	사평	1242	도	2,598	142	국(국토교통부)	
13	하동	북천	사평	126-1	도	35	35	하동군	
14	하동	북천	사평	1243	도	1,008	69	국(국토교통부)	
15	하동	북천	사평	127-4	도	198	95	하동군	
16	하동	북천	사평	119-1	도	27	27	하동군	
17	하동	북천	사평	120-1	도	15	11	하동군	
18	하동	북천	사평	121-1	도	45	45	하동군	
19	하동	북천	사평	116-1	도	6	1	하동군	
20	하동	북천	사평	117-1	도	15	15	하동군	
21	하동	북천	사평	114-1	도	20	7	하동군	

하 동 군 공 보

(85) 제 475 호

편 입 용 지 조 서 (국 · 공 유 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 적	소 유 자	
	군	면	리					성 명	주소
22	하동	북천	사평	83-1	도	71	71	하동군	
23	하동	북천	사평	109-2	철	6,280	953	국(국토교통부)	
24	하동	북천	사평	1241-3	구	1,888	1,443	국(국토교통부)	
25	하동	북천	사평	130-2	철	2,743	30	국(국토교통부)	
26	하동	북천	사평	108-1	도	36	5	하동농지개발조합	
27	하동	북천	사평	1239-3	도		1		
28	하동	북천	사평	130-8	도	53	1	하동군	
29	하동	북천	사평	131-4	도	37	6	하동농지개발조합	
30	하동	북천	사평	104-2	전	26	26	국(국토교통부)	
31	하동	북천	사평	107-5	임	440	357	국(국토교통부)	
32	하동	북천	사평	1220	천	12,950	16	국(국토교통부)	

하 동 군 공 보

(86) 제 475 호

편 입 용 지 조 서 (사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당초)	편입면적 (수정)	소 유 자	
	군	면	리						성 명	주 소
1	하동	북천	사평	159	답	2,563	65	99	김명선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271-2 산호맨션 3동 502호
2	하동	북천	사평	177	답	1,334	259	228	정재승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78
3	하동	북천	사평	산124-1	임	7,042	410	388	정성중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78
4	하동	북천	사평	178	답	408	216	208	정재승	하동군 북천면 배안골길 94
5	하동	북천	사평	179	임	40	6	0	김태자	부산 동래구 인락동 631-56
6	하동	북천	사평	158	답	1,473	1,473	1,473	정재승	하동군 북천면 배안골길 94
7	하동	북천	사평	180	임	400	294	400	정재승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78
8	하동	북천	사평	181	전	541	541	541	정재승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78
9	하동	북천	사평	155-1	임	7,521	295	305	정재승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78
10	하동	북천	사평	182	답	112	112	112	정재승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78
11	하동	북천	사평	152	전	615	76	70	김영우	부산 사하구 괴정동 11-2 한일하나로아파트 3동 207호
12	하동	북천	사평	산124-3	임	1,371	1,371	1,371	정재승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78
13	하동	북천	사평	126	답	3,089	3,089	3,089	정재승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78
14	하동	북천	사평	120	답	2,392	158	541	정재안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78
15	하동	북천	사평	127-3	답	1,465	294	312	문영조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34
16	하동	북천	사평	121	임	610	76	104	정재호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78
17	하동	북천	사평	115	답	23	23	23	김용원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1000 금산향한골든빌 118동 1004호
18	하동	북천	사평	83	답	316	316	316	정재승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78
19	하동	북천	사평	119	답	390	390	390	김용원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1000 금산향한골든빌 118동 1004호
20	하동	북천	사평	118	임	1,547	285	250	정순재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411
21	하동	북천	사평	109-1	답	3,193	175	243	김임태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712 관악드림타운 114-201

하 동 군 공 보

(87) 제 475 호

편 입 용 지 조 서 (사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 면적 (당초)	편입 면적 (수정)	소 유 자	
	군	면	리						성 명	주 소
22	하동	북천	사평	130-3	답	804	61	29	신동국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360 현대아파트 110동 1202호
23	하동	북천	사평	108	답	744	262	308	신동국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360 현대아파트 110동 1202호
24	하동	북천	사평	131-3	답	1,345	92	92	신동국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360 현대아파트 110동 1202호
25	하동	북천	사평	107-7	임	366	176	196	송재용	부산 북구 주례동 316 대성아파트 2동 609호
26	하동	북천	사평	104-1	전	774	55	70	이수현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965-1 금산아이파크 104동 1304호
27	하동	북천	사평	107-6	임	376	7	18	송기성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72
28	하동	북천	사평	106-4	답	278	31	46	김용원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1000 금산홍한골든빌 111동 703호
29	하동	북천	사평	106-3	답	291	228	228	김용원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1000 금산홍한골든빌 111동 703호
30	하동	북천	사평	107-4	임	1,620	17	9	문영조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42
31	하동	북천	사평	106-2	답	423	21	14	김용원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1000 금산홍한골든빌 111동 703호

하동군 공고 제2017 - 194호

지소뒯골천 정비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변경 공고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지소뒯골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변경 공고하오니, 금회 보상구간에 포함되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13일

하 동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지소뒯골천 정비사업
- 나. 위 치 :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711-15 ~ 982-1번지 일원
- 다. 사 업 량 : 하천정비 L=1,200m
- 라. 사업기간 : 2017. 01. ~ 2017. 12.
- 마.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 : 붙임 편입조서 참조

3. 토지·물건조서의 열람

- 가. 열람기간 : 2016년 10월 20일 ~ 11월 03일(15일간)
- 나. 열람장소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및 하동군 홈페이지
- 다. 기타문의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055-880-2532~5)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2017년 1월 ~

나. 보상금의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함

다. 보상방법 : 협의 성립 후 현금보상(계좌입금), 압류 및 근저당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토지소유자가 해제 후 계약체결 원칙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계약체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 현금(계좌) 지급

5. 감정평가업자 선정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옹진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기 타

가. 토지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되었을 경우 보상에서 제외하고, 누락되었을 경우 실사를 거쳐 보상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참고로,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지적법에 따라 분할 예정이며 예상편입면적과 확정면적은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보상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장소 및 보상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추어 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개인별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다. 토지 및 물건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송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055-880-2532~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 동 군 공 보

(90) 제 475 호

< 지소뫓골천 정비사업 편입토지 조서 >

편 입 용 지 조 서 (국·공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군	면	리					성 명	주 소
1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746-2	도 로	188	155	국	농림수산부
2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746-1	도 로	415	395	국	농림수산부
3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746	도 로	68	68	국	농림수산부
4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226	도 로	1,243	9	국	농림수산부
5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45-5	도 로	272	15	하동군	
6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711-15	답	1,120	8	하동군	경상남도
7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711-17	답	28	16	하동군	경상남도
8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743-1	구 거	2,196	1,335	국	농림수산부
9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51	도 로	676	598	국	농림수산부
10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218	도 로	3,415	24	국	국토교통부
11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201-28	구 거	3,855	2,314	국	국토교통부

하 동 군 공 보

(91) 제 475 호

편 입 용 지 조 서 (사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 면적 (당초)	편입 면적 (수정)	소 유 자	
	군	면	리						성 명	주 소
1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747-3	답	210	20	37	강균현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64
2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46-3	도로	7	3	1	정구현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700
3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45-2	대지	1,253	11	18	강위본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10길 6 한솔A 201-504
4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45-6	대지	58	10	15	임영실	포항시 북구 용흥동 57-2 현대A 104-501
5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44-1	대지	568	39	46	임영실	포항시 북구 용흥동 57-2 현대A 104-501
6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44	대지	827	65	67	임영실	포항시 북구 용흥동 57-2 현대A 104-501
7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43	대지	519	18	23	영일 정씨	영일정씨 도암공파원모제종회
8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42	답	260	69	69	임영실	포항시 북구 용흥동 57-2 현대A 104-501
9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41	답	960	89	14	임영실	포항시 북구 용흥동 57-2 현대A 104-501
10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37	답	2,274	435	420	노자영	전남 광양시 진등길 55-5 송보파인빌5차A 506-701
11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31-3	답	856	374	387	김용 외 1인	울산시 중구 복산동 611 복산맨션A 4-111
12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31-1	답	509	243	242	김대술	경남 하동군 고전면 지소2길 16
13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31-2	답	258	70	73	하성진	경남 하동군 고전면 명교리 436
14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711-20	답	8	8	8	김용현	진주시 옥봉남동 561
15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711-14	답	626	15	18	김용현	진주시 옥봉남동 561
16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711-6	답	3,222	40	47	김재윤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121
17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711-5	답	654	15	13	김재윤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121

하 동 군 공 보

(92) 제 475 호

18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711-4	답	1,480	62	43	김대범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64
19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711-13	답	931	6	5	박종문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65
20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711-1	답	1,349	46	43	박종문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65
21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50	답	168	16	16	정봉화 외 2인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45
22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47-3	도로	23	16	11	송명호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948
23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26-1	도로	40	5	2	김을용	창원시 사파동 35브룩 13노트
24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26-3	도로	63	33	32	김을용	창원시 사파동 35브룩 13노트
25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26-2	답	294	179	174	노정훈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44
26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27-3	답	1,825	576	563	노정훈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44
27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27-2	답	1,742	437	451	노정훈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44
28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28-1	전	2,668	74	81	강위정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82 한양A 106-407
29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29	답	1,091	380	399	노자영	전남 광양시 진통길 55-5 송보파인빌5차A 506-701
30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30	답	879	149	156	김재문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919
31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982-1	답	2,245	229	242	김재호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121
32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711-2	답	4,938	13	9	김대범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64

하동군 공고 제2017-195호

하동군 인구증가 아이디어 공모

하동군에서는 『하동사랑 클러스 51』 실현을 목표로 인구증가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 관심도 제고를 위해 주민 여러분들의 발전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공 모 명 : 『하동사랑 클러스 51』 달성을 위한 인구증가 아이디어 공모

□ 공모기간 : 2017. 2. 15(수) ~ 3. 16(목)

□ 공모자격 : 일반주민 및 공무원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인터넷, 우편, FAX

- 인터넷 : 하동군청(www.hadong.go.kr) → 참여 → 신고센터 → 국민제안

- 팩 스 : 055-880-2159

- 우 편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행정과

※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해 유효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 인구증가 시책 제안서는 연중 수시 접수하며 채택된 안에 대하여 소정의 하동사랑상품권 지급

□ 제안과제

- 출생률 증가 및 사망률 감소를 위한 제안
- 전출억제 및 전입 유도를 위한 제안
- 지역학교의 명품학교 육성을 위한 제안
- 기타 인구증대 시책과 관련된 자율 제안

□ 심사 및 시상내용

○ 심사 : 1차 심사(적정성 검토) ⇒ 2차 최종 심사(군정조정위원회)

○ 시상

- 특별상(1명) : 상장 및 100만원
- 우수상(2명) : 상장 및 50만원(총100만원)
- 노력상(3명) : 상장 및 30만원(총90만원)
- 참여상(10명) : 10만원(총100만원)

※ 부상금 : 하동사랑상품권

☞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결과발표 : 군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제안으로 보지 않은 내용

- 타 시·군에서 일반적으로 시행 중에 있는 사항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사항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대한 모든 권리는 하동군에 있음.
- 신청서류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형식과 분량에 구애 없이 작성
- 응모자는 제안서가 기한 내에 도착 되도록 하여야 하며, 송부지연으로 인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중복 응모된 제안인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서 우선 심사 선정
- 공동응모자는 시상금이 주제안자(대표자)에게 지급됨.
- 제안내용이 표절 등 기타 부정의 방법에 의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상 이후 발견시 상장 및 시상금 환수 조치
- 기타사항 문의처 : 하동군청 행정과 인구정책 담당 (☎055-880-2842~4)

[별지 1]

인구증가 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 제안서

제 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		
소 속 (연락처)		이 름	
제안동기	※ 현황, 개요, 문제점 등 제안이유 기재		
제안내용	※ 문제점 등의 개선 및 해결 방법 및 유사한 사례 등 기술 (사례수집 및 분석, 방안 등 제시)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 이용가능”</p>		
기대효과	※ 제안 된 내용이 실시되면 얻을 수 있는 효과		

하동군 공고 제2017 - 211호

하동군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하동군보건소 방역소독사업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7년 02월 일

하 동 군 수

1. 채용분야 및 인원

분야별	인원	근무지	담당업무	근로기간
예방의약 담당부서	1명	하동군보건소	방역소독	2017. 3. 13 ~ 2017. 10월

2. 응시자격

가. 일반 자격 요건

- 하동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제12조 (채용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공고일 현재 하동군 관내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 모두 주소를 두고 실거주 하고 있는 자
- 민원인 친절 응대 가능한 정신·신체 건강한 자
- 해당분야 경력자 우대
- 운전면허증 소지자 및 운전이 가능한 자

나. 겸직 불가(상시근무 가능자)

다. 서류전형 원서접수결과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인원이 채용인원을 초과한 경우 면접 별도 실시

3.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심사 점수와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자를 선발
※ 면접시험은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실시

4. 원서접수 및 방법

- 원서접수기간 : 2017. 02. 20(월) ~ 02. 28(화)
※ 평일 09시 ~ 18:00까지 접수 (오후12시~13시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 (하동군보건소 예방의약부서)

5.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03. 2(목) / 개별통보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함(채용예정인원을 초과 할 경우 실시)
- 면접장소 : 하동군보건소
- 면접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일시 : 2017. 3. 3(금) 11:00(면접시험 일정 등이 변경 될 경우 개별 통지)

6. 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17. 3. 10(금) 17:00 예정(신원조회 후)
- 발표방법 : 개별통지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자필이력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하동군 수입증지 첨부

8.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 근로시간 : 매주 월 ~ 금요일(주 5일근무) 1일 8시간
- 단 하절기 방역기간(5월~9월)에는 : 매주 월 ~ 토요일 1일 8시간
- 급 여 : 1일 62,800원, 간식비 3,000원
- 주·휴무근무수당 지급
- 4대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9.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880-66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동 군 공 보

(98) 제 475 호

[붙임 1]

응 시 원 서(원본)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같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7년 월 일

응시자 : 성명

(날인)

하동군보건소장

귀하

본 적	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전 화		
주 소	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휴대폰		
학 력 (최종)	학교	년 월	학교 졸업·재학·수료·중퇴	
	대학원	년 월	대학교 대학원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하 동 군 수 입 증 지 부 붙 이 는 곳	경 력	년 월 부터 년 월까지 ()근무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응시번호	
	면허 및 자격	면허증		
		기타 자격증(전산등)		
응시 분야	<input type="checkbox"/> 방역소독사업			

응 시 원 서(부 본)				사 진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2017년 하동군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응 시 번호		
응시 직종	<input type="checkbox"/> 방역소독사업			

시험장소 및 합격자 공고 하동군홈페이지 http://www.hadong.go.kr	응 시 표		성 명	(한글)	사 진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2017년 하동군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성 명	(한자)	
	응 시 번호		주민등록 번호		
	응시 직종	<input type="checkbox"/> 방역소독사업			
	2017년 월 일		하동군보건소장		

[붙임 2]

이 력 서

※응시 번호			채용분야	<input type="checkbox"/> 방역소독			사 진 (3cm×4cm)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 소				(Tel:) (HP:)			
학 력	부 터	까 지	학 교 명		전공학과	학위명	
가 족 사 항	관계	성명	나이	관계	성명	나이	
신체 조건	키		체중		시력		
자격 면허	일자	종 별	병역	군별	계급	복무기간	미필사유
경력	기 간		직 장 명	직 위	담당사무	발 령 청	

2017년도 방역소독사업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2017 . . .

작성자 : (서명)

하 동 군 수 귀하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생년월일 :

○ 작 성 요 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경력활동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자기소개서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시 활용됨

2017. . .
작성자 (서명)

[붙임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 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공공기록물관리법령」에 따라 관리·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동의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경력·수사·수배 조회자료(경찰청)

하동군수 귀하